

동작구의회공고 제2021-7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회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 시행)에 따른 근거조항 개정과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근거조항 마련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및 띄어쓰기 등 변경(안 제1조 ~ 제2조)
- 나. 특별위원회 존속기한 필요시 상시 운영 가능 하도록 개정(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회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노량진동47-2)]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716, FAX : 820-1474, E-mail : kyong69@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62조” 를 “「지방자치법」 제71조” 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작구의회(이하 “의회” ” 를 “동작구의회(이하 “의회” ” 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 을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제7조(특별위원회) ①·② (생략)</p> <p>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p> <p>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71조----- ----- ----- -----.</p> <p>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 동작구의회(이하 “의회”-----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7조(특별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p> <p><삭 제></p>